

-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-

복도 · 계단 등 **공용부분 적치물 적치** 금지 안내문

평소 화재 예방과 소방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제천화재와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에서의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비상구 폐쇄행위로 지적이 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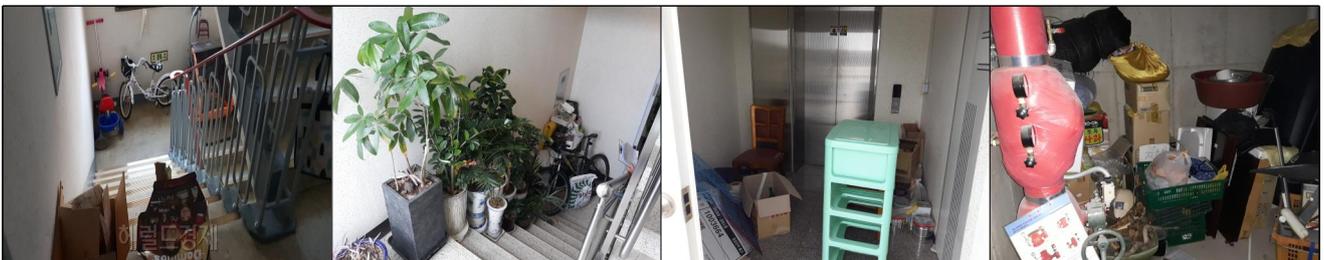


《 목욕용품으로 원천봉쇄된 비상구 》

이에 파주소방서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시에는 행위자는 물론 관리 책임자까지 「소방시설법 제16조 1항」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, 해당 건축물 관계인께서는 소방관련법규를 잘 준수하시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

복도 · 계단 등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상구 폐쇄행위를 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
〈주요 위반 사례〉



《공용부분내의 적치물 적치-1》 《공용부분내의 적치물 적치-2》 《공용부분내의 적치물 적치-3》 《공용부분내의 적치물 적치-4》

파 주 소 방 서